

지하주차장 상판 위에 도시가스배관 매설관련



공동주택 부지 내 지하주차장 상판 위에 가스배관을 매설하는 경우 지하주차장 상판과 지하주차장 벽을 타 시설물로 보아 0.3m 이상 이격 설치토록 운영되어 왔으나,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는 지하주차장의 상판과 벽은 타 시설물로 볼 수 없으므로 이격 설치하지 않도록 산업자원부에 질의한 결과 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였다.

■ 질의내용

공동주택 부지내 지하주차장 상판 위에 가스배관을 매설하는 경우 지하주차장 상판과 지하주차장 벽은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 6 제8호 가목(4)다의 규정에 의한 타 시설물로 보아 0.3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하는지?

■ 회신내용

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 질의한 지하주차장의 상판 및 벽이 도시가스사업법령에 의한 타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 바, 동 시설물은 재건축이나 건축물 철거 등의 건축공사 외에는 매설배관 손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동 시설물을 타 시설물로 보기 어려움에 따라 동 시설물은 도시가스 배관의 매설시 일정 간격을 유지하여야 할 타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음. <에너지안전과-1821(2005.9.13)>